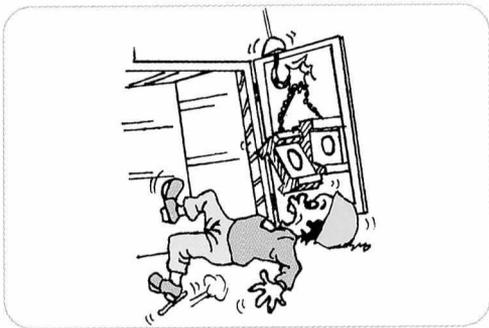


1. 재해발생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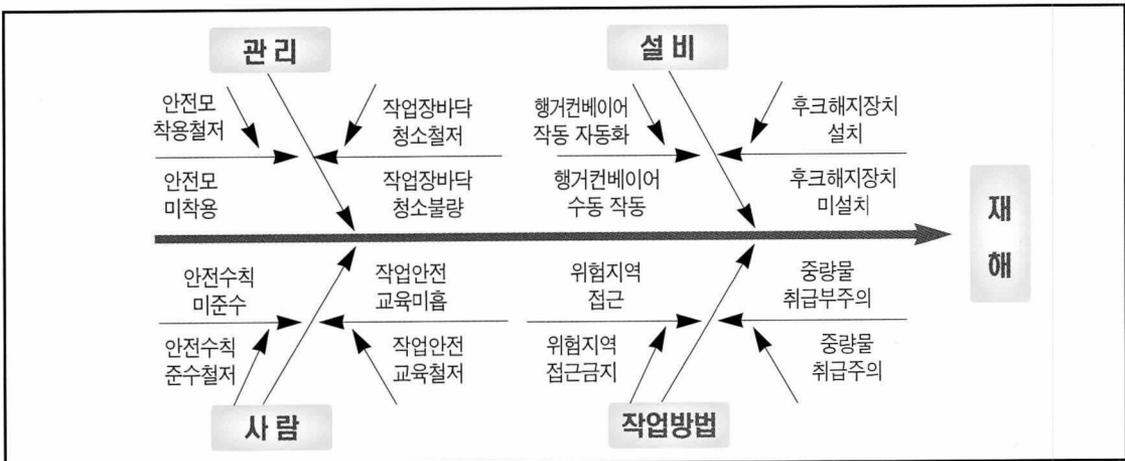
2001년 9월 ○일 10:00경 경기 김포시 ○○금속 주물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주물제품을 쇼트연마작업 하기 위해 컨베이어 행거에 걸고 숏트기로 밀어 넣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행거에 걸린 주물제품과 충돌하여 주물품이 피재자의 두부에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.
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정리 정돈 및 청소 불량(숏트볼)
- 나. 낙하물 방지장치 미설치
- 다. 중량물 취급시 안전모 미착용
- 라. 안전교육 미흡

3. 재해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 작업장 정리 정돈 및 청소철저

-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함

나. 낙하물 위험방지조치

- 중량물을 후크에 걸고 작업할 때는 매달린 물건이 후크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후크해지장치를 부착하여 매달린 물체를 관리함.

다. 보호구 지급 및 착용

- 중량물을 행거에 매달아 운반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자에게 안전모,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.

라. 안전교육 철저

- 중량물의 낙하 및 전도위험 교육실시로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함.

5. 법위반 사항

- 법 제23조 :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: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

1. 재해발생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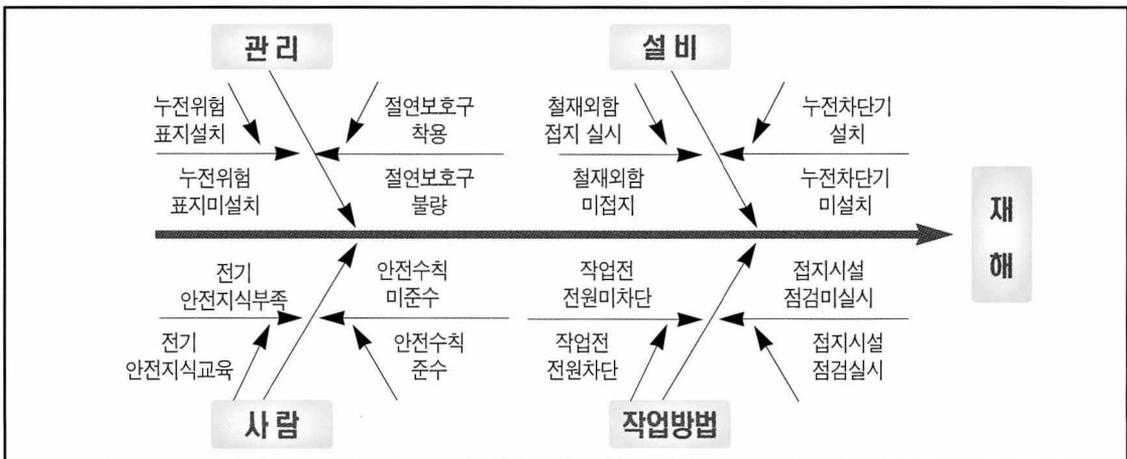
2001년 08월 ○일 12:00경 충남 서산 ○○산업 압출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압출기 하부에 외부 공기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철재 칸막이를 설치하던 중 누전된 원료 공급설비인 호퍼로더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.
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전기기계·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 불량
- 나. 접지선 관리불량
- 다. 안전보호구 미착용
- 라. 누전차단기 미설치

3. 재해요인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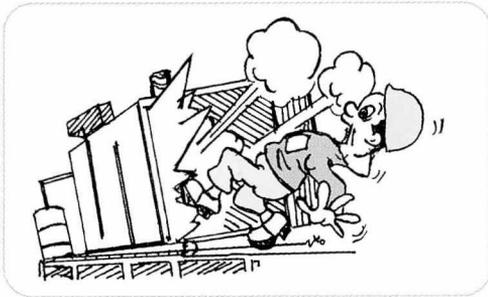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전기기계·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실시
 -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해 접지를 실시하여 누전전류가 대지로 방출되어 작업자 접촉시에도 감전예방
 - 나. 접지선 관리철저
 - 접지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접지선의 탈락, 접지저항 측정 등 접지시설이 양호하도록 폐쇠형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망 설치.
 - 다. 안전수칙 준수
 - 기계기구 등 설비수리시 작업공간 협소로 신체 접촉의 위험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한 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작업실시
 - 라. 복장보호구
 - 전기기계기구 주위에서 작업시 깨끗하고 건조한 작업복 및 절연보호구 등을 착용.
- ### 5. 법위반 사항
- 법 제23조 :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 - 법 제31조 제1항 :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

1. 재해발생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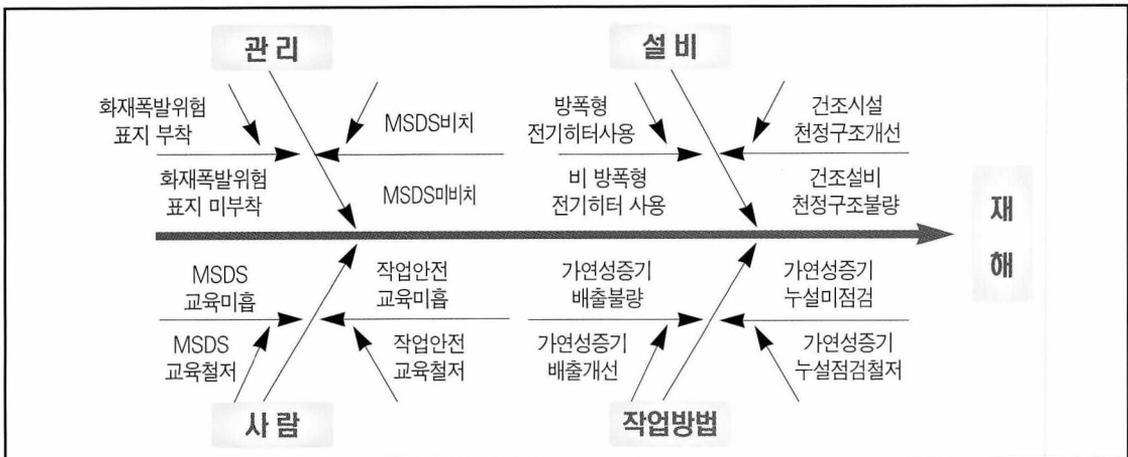
2001년 9월 ○일 10:00경 경기 안산시 ○○산업(주)에서 핸드폰 케이스 도장작업 후 건조설비에 넣고 건조작업 중,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전기히터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여 주변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

- 가.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미사용
- 나. 위험물 건조설비 열원으로 전기히터 사용
- 라. 가연성증기 배출장치 불량
- 다. 건조설비 구조불량

3. 재해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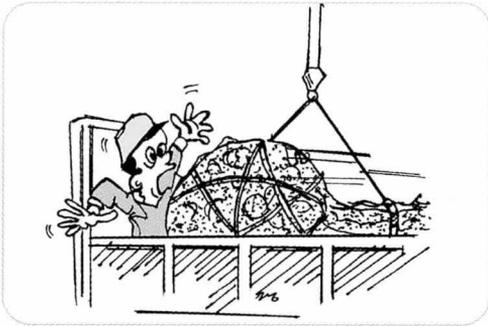
- 가. 방폭조치 철저
 - 신나는 인화성 물질로써 신나 증기에 의한 폭발 위험장소에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.
- 나. 위험물 건조설비 직화방식 사용금지
 - 위험물 건조설비에 전기히터 등 직화식은 가연성증기에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·폭발 위험이 크므로 간접가열식 열원을 사용하여야 함(증기, 열매체유 등)
- 다. 가연성증기 배출시설 개선
 - 건조설비 배출구를 다른 설비와 연결사용의 경우 배출 불량의 원인이되므로 독립 배출구 설치가 필요함.
- 라. 건조설비 구조변경
 - 위험물 건조설비 내부의 천정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폭발구를 설치하여 주위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.

5. 법위반 사항

- 법 제23조 :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: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미 실시 시 500만원이하 벌금

1. 재해발생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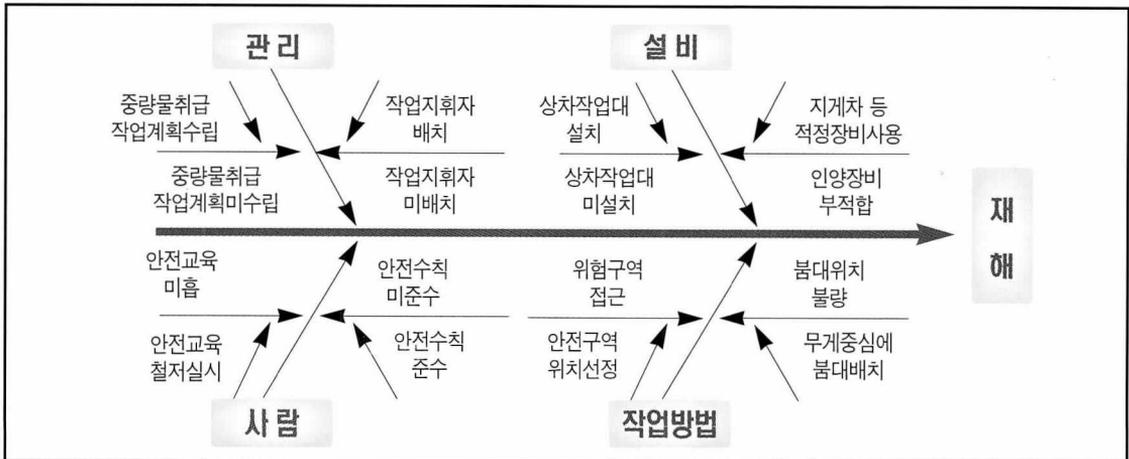
2001년 9월 ○일 경기 파주 ○○조경(주)에서 은행나무를 이식하기 위해 트럭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차작업 중 1차 상차된 나무를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나무를 인양하는 순간 나무 뿌리부분이 앞으로 밀리면서 나무와 적재함 사이에 있던 작업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.
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미수립
- 나. 작업지휘자 미지정
- 다. 작업자 위치 불량
- 라. 안전교육 미 실시

3. 재해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수립

- 중량물 취급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,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함.
- 크레인작업시 붐대의 위치는 인양시 화물의 좌우로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무게의 중심위치에서 인양하도록 하여야 함.

나. 작업지휘자 배치

- 중량물 크레인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함.

다. 안전한 작업장소에서 작업

- 재해위험이 없는 위험구역에서 벗어난 안전한 장소에서 유도하여야 함.

라. 안전교육 철저

- 중량물취급 안전교육 철저히 중량물 취급 재해예방

5. 법 위반 사항

- 법 제23조 :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: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미 실시 시 500만원이하의 벌금

1. 재해발생경위

2001년 10월 ○일 08:00경 서울 양친구에서 ○건설(주) ○○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흙막이용 H빔 설치작업 중 흙막이 작업장 바닥에 있는 용접선 등 작업도구를 정리하던 중 상부의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

- 가. 굴착면 구배 미준수
- 나. 작업전 안전점검 미 실시
- 다. 작업계획서 미작성
- 라. 관리감독자 미배치

3. 재해요인도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 굴착면의 구배준수

- 흙막이 지보공을 Raker 공법으로 실시할 경우 지반의 붕괴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착면의 구배를 아래와 같이 유지하여야함.

· 습지 (1:1~1:1.5), 건지 (1:0.5~1:1)

- 토사는 굴착 중 위의 구배를 유지하면서 Raker 설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굴착을 진행하여야 함.

나. 작업전 안전점검 철저

-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전에 작업장소 및 주변의 지반상태 변화를 점검한 후 작업을 실시.

다. 작업계획서 작성 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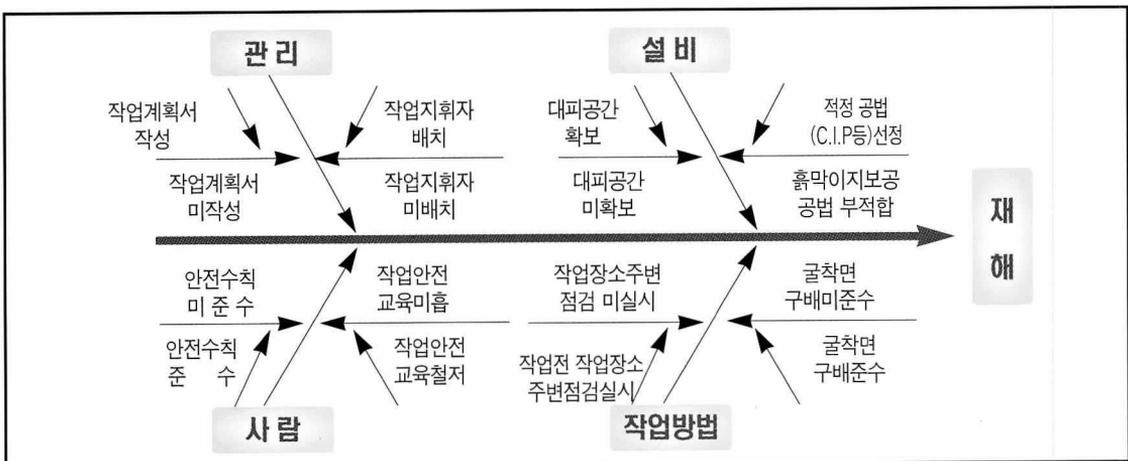
-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그 내용 교육.

라. 관리감독자 배치

- 굴착작업시 관리감독자,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작업지휘

5. 법위반 사항

- 법 제23조 :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: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시 500만원이하의 벌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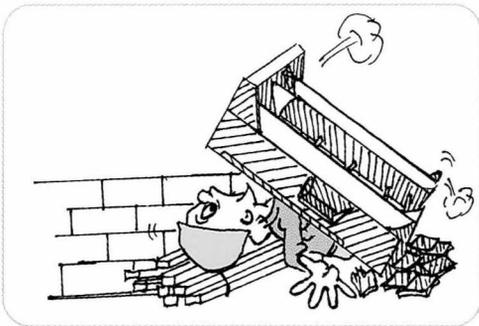


조선분야

1. 재해발생경위

2001년 11월 ○일 11:00경 경남 김해시 ○○산업(주) 옥외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컨테이너 선박 무게 1톤, 높이 2.5m의 블록부품을 세워 놓고 사상작업을 하던 중 블록부품이 옆으로 전도되면서 작업자를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

- 가. 전도방지조치 미실시
- 나. 중량물 취급시 보호구 미착용
- 다.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수립
- 라. 안전교육 미실시

3. 재해요인도

4. 동종재해 방지대책

- 가. 전도방지조치 실시
 -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할 때에는 중량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체인, 로프, 후크를 사용하여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을 함.
- 나. 적정보호구 지급 및 착용.
 - 중량물의 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모, 안전화 등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.
- 다.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
 - 중량물 취급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,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함.
- 라. 안전교육 실시
 - 중량물의 위험성, 안전작업요령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함.

5. 법 위반 사항

- 법 제23조 :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: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미 실시시 500만원이하의 벌금

